

# 입찰공고 (入札公告)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入札に付す事項

- 가. 입찰명 : 태양광발전소 구축용 FEP관 및 부자재 구매
- 이. 入札名 : 太陽光発電システム構築用FEP管及び付属資材の購買
-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7.06.02.
- 다. 契約期間 : 契約締結日 ~ 2017.06.02.
- 라. 납품차수 및 수량 : 자재규격서 참조(2017.06.02)  
※ 자재납품은 공정일정에 따라 차수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마. 納品次数及び数量 : 材料規格書参照(1次(2017.06.02))  
※ 資材納品は工程日程によって次数及び日程が変更する可能性がある
- 바. 납품장소 :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이바라키현 히타시주오 소재)
- 브. 納入場所 : 太陽光発電所の工事現場(茨城県日立市十王所在)
- 갸. 세부내역 : 자재규격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 첨부자료 **필히 참조**  
ホ. 詳細内訳 : 資材規格書及び契約特殊条件等は、添付資料を**必ず参照(個別質疑)**

##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최저가경쟁 낙찰제

-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정가격 : ¥ 12,337,950円(일본 소비세별도)

## 2. 入札及び落札者の決定方法 : 一般競争入札 / 最低価競争落札制

- 価格入札書を開札し、入札金額が予定価格以下の最低価格で入札した者が落札者として決定。
- 予定価格 : ¥ 12,337,950円(日本消費税別途)

## 3. 입찰참가신청 자격 요건 : 일본내 사용가능한 FEP관 및 부속자재 조달가능 업체

## 3. 入札参加申請資格要綱 : 日本内で使用可能なFEP管及び付属資材の調達可能な業者

## 4. 입찰서(가격) 제출

### 4. 入札書(価格)提出

- 가. 입찰서 제출(오프라인 제출)
- 이. 入札書提出(오프라인提出)
  - ① 제출일시 : 2017.05.22, 10:00 까지(토요일, 일요일 제외)
  - ① 提出日時 : 2017.05.22 10:00まで(土曜日、日曜日は除く。)
  - ② 제출장소 : 이바라키현 히타치시 사이와이초 1-20-1 센터빌딩 3층 한전KDN(주) 일본특별지점
  - ② 提出場所 : 茨城県日立市幸町1-20-1 セントラルビル3階 韓電KDN(株) 日本特別支店
  - ③ 제출서류 : 입찰서(한전KDN 양식, 첨부파일 참조, 직인필)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③ 提出書類 : 入札書(韓電KDNの様式、添付ファイル、職印必要),  
法人登記簿謄本、法人印鑑証明書、算出内訳書、入札保証金支給覚書
  - ④ 가격입찰서 기재내용
  - ④ 価格入札書の記載内容
    - 입찰서 가격은 계약 희망 금액의 108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낙찰 있어서는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와 관련되는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에 관계없이 입찰에 기재된 가격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 금액 (1 엔 미만은 잘라 버린다.) 가지고 낙찰하기 위하여)로,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재 한 내역서를 첨부 할 것
    - 入札書記載価格は、契約希望金額の108分の100に相当する金額 (落札に当たっては、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に関連する課税事業者又は免税事業者にかかわらず、入札に記載されている価格に当該する金額の100分の8に相当する額を加算した金額 (1円未満は切り捨てる)をもって落札とするため)とし、

数量、単価、金額等を記載した工事費内訳書を添付すること。

- 엔화(JPY)로 표시하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 円価(JPY)で表示するが、アラビア数字で表記

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인편접수, 밀봉 및 겉표지에 직인 날인

⑤ 提出方法 : **直接提出**

- 提出書類は密封し人づての受付、密封及び表紙に職印捺印

6. **입찰의 무효**

- 가격입찰서를 엔화(JPY)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입찰제출서류가 누락된경우(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6. **入札の無効**

- 価格入札書を円(JPY)で表示しなかった場合
- 入札提出書類が抜けている場合(入札書、法人登記簿謄本、印鑑証明書、算出明細書、入札保証金支給覚書)

7. **유의 사항**

7. **留意事項**

- 문의처 : 일본특별지점 직원 카리베 나루미(0294-26-7081)
- 質疑先 : 日本特別支店職員 苺部 成望(かりべ なるみ) (0294-26-7081)
  - 자재규격서등 담당자 : 김태승 과장(0294-26-7081)
  - 資材規格書等 担当者 : 김·테스·노 課長 (0294-26-7081)
  - 계약관련 담당자 : 계약팀 임현수 대리 (+82-61-931-6869)
  - 契約関連 担当者 : 契約チーム イム・ヒョンス 代理 (+82-61-931-68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上記のとおり公告いたします。

2017. 05. 18

한전케이디엔(주) 대표이사  
韓電ケーディーエヌ(株) 代表理事

# 입찰서 (入札書)

입찰건명 入札件名	히타치 태양광발전소건설 구축 케이블 보호용FEP관 및 부자재 구매 日立 十王太陽光発電所建設ケーブル保護用FEP管及び付属資材の購買																				
입찰금액 入札金額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十</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億</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千</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百</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十</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万</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千</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百</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十</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円</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十	億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十	億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납기일자 納期日時	1차(1次) : 2017.06.02.																				

귀사 계약규정에 의한 입찰(수의시담)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동 계약특수조건, 자재규격서 등 계약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위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貴社の契約規定による入札(随意示談)留意書に基づき応札し、この入札が貴社による承諾がされれば契約一般条件等、同契約特殊条件、資材規格書等の契約上のすべての条件に従い、上の入札金額で契約期間の間、契約上の義務を履行することを確約し、本入札書を提出いたします。

2017 . . . . .

주 소 (住所) :

상 호 (商号) :

대표자 (代表者) : (인 印)

**주의사항(注意事項)**

- (1) 법인인감증명상의 인감 또는 위임장의 원인감과 상이할 때는 무효가 됩니다  
(1) 法人印鑑証明上の印鑑又は委任状の原印鑑と相違する場合には無効となります。
- (2) 에 기재된 불명확한 것 및 금액란의 정정을 하고 있는 것 등은 무효가 됩니다  
(2) 記載された不明確なもの及び金額欄の訂正をしてあるもの等は無効となります。
- (3) 낙찰 결정에 있어서는, 입찰(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 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해당 금액에 1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이를 버린 금액)으로 낙찰 가격으로 하므로, 소비세에 관련된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를 불문하고 계산한 계약 희망 금액의 108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  
(3) 落札決定に当たっては、入札(見積)書に記載された金額に当該金額の8%に相当する額を加算した金額(当該金額に1円未満の端数がある時はこれを切り捨てた金額)をもって落札価格とするため、消費税に係る課税事業者であるか免税事業者であるかを問わず、見積もった契約希望金額の108分の100に相当する金額を記載すること。

집행자확인 執行者確認	감사업회확인 監査立会確認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入札保証金支給覚書)

공고번호(広告番号) :

입찰건명(入札件名) : 케이블 보호용 FEP관 및 부자재 구매

(ケーブル保護用FEP管及び付属資材の購買)

귀사에서 시행하는 상기 입찰에서 당사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貴社より施行される上記入札にて、弊社が落札者として選定された後、正当な理由なしに契約を締結しない、あるいは約定された期日以内に契約保証金を納付しないために入札保証金の貴社帰属事由が発生した場合、入札金額の5%に当該する金額を貴社へ即時現金で納付し、その他入札保証金の貴社帰属事由による如何なる措置についても貴社の決定または要求に従うことを確約いたします。

2017年 月 日

주소(住所) :

상호(商号) :

사업자번호(事業者番号) :

대표자(代表者) :

한전케이디엔(주) 귀중

韓電ケーディーエヌ(株) 御中

## 산출내역서(算出明細書)

입찰건명 : 히타치 태양광발전소건설 구축 케이블 보호용 FEP관 및 부자재 구매

入札件名 : 日立十王太陽光発電所建設ケーブル保護用FEP管及び付属資材の購買

항목 項目		단가[円] 単価	수량[m, ea] 数量	항목 項目		단가[円] 単価	수량[m, ea] 数量
FEP	40Φ			커플링 カップリ ング	40Φ		
FEP	65Φ			커플링 カップリ ング	65Φ		

2017. 5. .

상 호 (商 号) :

대 표 자 (代表者) :

(인 印)

# 물품 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物品購買(製造) 契約一般条件)

**제1조(총칙) 第一条(総則)** 매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購買者と契約相手者は、物品購買標準契約書(以下"契約書"とする。)に記載する物品の購買("製造"を含む。以下同じ。)契約書に関する第三条の規定によって契約文書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信義と誠実の原則に即してこれを履行する。

## **제2조(정의) 第二条(定義)**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직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 사장 또는 계약담당직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발주계약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규정"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この条件に使用する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購買者"とは、韓電ケーディーエヌ株式会社(以下"当社"とする。)社長、又はその委任を受け、契約業務を担当する者(以下"契約担当職員"とする。)を言う。

2. “契約相手者”とは、韓電ケーディーエヌ株式会社社長、又は契約担当職員と物品購買契約を締結した自営者、又は法人を言う。

3. この条件にて、別に定める場合を除いては「国家を当事者とする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国家を当事者とする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その他公共機関契約事務運営規定」、「発注契約規定」(以下各々“施工令”、“施工規則”、“契約事務規定”、“規定”とする。)及び入札留意書(以下“留意書”とする。)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 제3조(계약문서) 第三条(契約文書)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주문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사무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외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① 契約文書は契約書、規格書、留意書、物品購買(製造)契約一般条件、物品購買契約特殊条件、注文書、算出内訳書等で構成する。ただし、算出内訳書は第十条及び第十一条の規定による契約の変更及び物価変動による契約金額の調整に適用する基準として契約文書の効力をもつ。

② 契約担当職員は、契約事務規定及び「国家を当事者とする契約に関する法令」、物品関

連法令及びこの条件に定める契約一般事項の他に当該して、契約の適正な履行のために必要な場合、物品購買契約特殊条件を定め、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できる。

③ 第二項にしたがい定められた物品契約特殊条件「国家を当事者とする契約に関する法令」及びこの条件による契約相手者の契約上の利益を制限する内容がある場合、特殊条件の同内容は効力が認められない。

④ この条件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契約当事者間で行われた通知文書等は、契約文書としての効力をもつ。

#### 제4조(사용언어) 第四条(使用用語)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① 契約を履行するにあたり、使用する言語は韓国語を原則とする。

② 契約担当職員は、契約締結時、第一項に規定に関わらず必要だと認められる場合は、契約履行と関連し契約相手者が外国語を使用したり外国語と韓国語を並行し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

③ 第二項の規定により、外国語と韓国語を並行し使用する場合、外国語で記載された事項が韓国語と相違するときには、韓国語で記載された事項が優先とする。

#### 제5조(통지 등) 第五条(通知等)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① 口頭による通知、申請、請求、要求、返信、承認又は指示等(以下"通知等"とする。)は、文書で補完されて効力をもつ。

② 通知等の場所は契約書に記載された住所とし、住所を変更する場合にはこれを即時に契約当事者へ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通知等の効力は、契約文書とは別に定める場合を除いては契約当事者へ到達した日から発生する。この場合、到達日が公休日の場合はその翌日から効力が発生する。

④ 契約当事者は、契約履行中、関係法令及びこの条件等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書面で正当な要求を受けた場合にはこれを誠実に検討して返信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6조(채권양도) 第六条(債權讓渡)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매자의 발주계약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契約相手者は、この契約により発生した債權(代金請求權)を第三者へ讓渡することができる。

② 契約相手者が債権譲渡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あらかじめ購買者の発注契約規定にしたがって申請及び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購買者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債権譲渡と関連し、適正な契約履行目的等、必要な場合は債権譲渡を制限する特約を定め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

## 제7조(계약보증금) 第七条(契約保証金)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者は、契約締結日まで施行令第五十条の規定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施行令第三十七条第二項に規定された現金又は保証書等で契約保証金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契約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の納付を免除を受ける場合は、第八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当社帰属事由が発生するときに、契約保証金に該当する金額を現金で納入することを保証するために、その支給を確約する内容の文書(以下"契約保証金支給覚書"とする。)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単価契約による場合として、数回に分割して契約を履行するようにするときには、毎回別履行予定量中、最大量に契約単価を乗じた金額の100分の1以上の金額以上を契約

保証金として納付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契約担当職員は、施行令第三十七条第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や現金で納付された契約保証金を契約当事者が特別な理由で施行令第三十七条第二条第一号乃至、第五号に規定された保証書等で代替納付することを要請したときには、同価値相当額以上で代替納付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및 기타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⑤ 契約相手者は、物価変動及びその他の事由で契約保証金額が増額されたり、契約履行期間が延長される場合には、これに相応する金額の契約保証金を第一項の規定により追加で納付したり、保証期間を延長しなければならず、契約担当職員は契約金額が減額された場合にはこれに相応する金額の契約保証金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第八条(契約保証金の処理)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① 契約相手者が適当な理由なしに契約上の義務を履行しないときには、契約保証金は当社に帰属する。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第一項の規定は、施行令第六十九条の規定により長期継続契約において契約相手者が二次以降の物品製造契約を締結しない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第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契約保証金支給覚書を提出した場合として契約保証金の当社帰属事由が発生し、契約担当職員の納入要請があるときには契約相手者は当該契約保証金を遅滞なく現金で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り、契約保証金を当社に帰属するにあたってその契約保証金はこれの既成又は既納部分に関する未支給額と上計処理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だし、契約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を免税を受けた者の場合には、当社に帰属された契約保証金と既納部分に関する未支給額を上計処理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⑤ 契約相手者が納付した契約保証金は、契約の履行された後、契約相手者の請求により返還する。

####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第九条(契約履行上の監督)**

① 구매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購買者は、契約の適正な履行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だと認める場合には、物品の製造のために使用する材料及びその他製造工程について監督することができ、契約相手者にたいして必要な措置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契約の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 ② 契約の特殊条件や規定に、生産監督又は中間検査事項が明示されているときには、契約相手者は事前に生産計画書を該当部署へ提出し必要な時점에監督又は検査を要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生産監督や中間検査を要する事項はこれを完了しなくては生産を継続することはできない。
- ③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契約相手者は、購買者の監督業務遂行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購買者は監督業務を遂行するにあたって、契約相手者の業務を不当に妨害してはならない。

#### 제10조(계약의 변경) 第十条(契約の変更)

- ① 구매자는 계약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물품의 수량, 금액, 규격, 납기 또는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① 購買者は、契約後必要に応じて約定された物品の数量、金額、規格、納期又は納品場所等、契約条件を相互協議し、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구매자가 정한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② 第一項の場合に、契約金額の変更が必要な場合には算出内訳書上の単価(以下"契約単価"とする。)による。ただし、

③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율(사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契約単価が無い新規費目の単価は、契約変更当時を基準で算定された単価に落札率(事前価格に対する落札金額又は契約金額の比率を言う。)を乗じた金額とする。

###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第十一条(物価変動による契約金の調整)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① 物価変動による契約金額調整は、施行令第六十四条及び施行規則第七十四条にて定めるところによる。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을 및 지수조정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을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을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同一の契約に対する契約金額の調整時、品目調整率及び指数調整率を同時に適用はならず、契約を締結するときに契約相手が指数調整率の方法を望む場合を除いては、品目調整率の方法で契約金額を調整するよう契約書に明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契約履行中、契約書に明示された契約金額調整方法を任意に変更してはならな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

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第一項の規定により、契約金額を増額する場合には契約相手者の請求によらなければならず、契約相手者は第二十三条の規定により完納代価(長期継続契約の場合には、各次数別の完納代価)受領前までに調整申請をすれば調整金額の支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調整された契約金額は直前の物価変動による契約金額調整基準日から90日以内にこれを再度調整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だし、天災、地変又は原材料の価格高騰で当該期間内に契約金額を調整せずに契約履行が困難だ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契約を締結した日又は直前の調整基準日から90日以内にも契約金額を調整することができる。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契約相手者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契約金額を増額を請求する場合には、契約金額調整内訳書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購買者は、第一項乃至、第四項の規定により契約金額を増額する場合には、契約相手者の請求を受けた日から20日以内に契約金額を調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予算配分の遅れ等、不可避な事由がある場合には契約相手者と協議しその調整期限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契約金額を増額することができる予算が無いときには製造量等を調整しその代価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

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당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⑥ 契約担当職員は、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による契約相手者の契約金額調整請求内容が、一部不備であったり明らかでない場合には遅滞なく必要な補完要求をしなくてはならず、この場合契約相手者が補完要求を通知を受けた日から当社がその補完を完了した事実を通知を受けた日までの期間は、第五項の規定による期間に算入しない。ただし、契約相手者の契約金額調整請求内容が、契約金額調整要件を満たしていなかったり、関連証拠書類が添付されていない場合には、その事由を明示し、契約相手者へ当該請求書を返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12조(납품) 第十二条(納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① 契約相手者は、契約書に定められた納品期日までに該当物品(検査に必要な書類等を含む。)を「産業標準化法」第二十四条による「韓国産業標準」(特別な事由がない限り「物流政策基本法」第五条による物流標準を含む。)を遵守し、購買者が指定する場所に納品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물품의 납품은 구매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은 합격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다만, 계약서상 설치 또는 성능시험 등 별도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완전히 수행한 때에 완료된다.

② 物品の納品は、購買者が定める手順により検査を受けた合格品を購買者が指定した場所に契約相手者から受領したときに完了される。ただし、契約書上設置又は性能試験等、別途の条件がある場合にはこれを完全に遂行したときに完了する。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구매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第二項の規定により納品された物品を検査、受領するで購買者の責任ない事由によって発生した物品の忘失、破損等は、契約相手者の負担とする。

④ 구매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④ 購買者が必要によって分割納品を要求したり、契約上分割納品が許容される場合を除いては分割納品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⑤ 납품에 따른 포장비, 운반비, 보관비 등 기타 제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納品による包装費、運送費、保管費等その他諸費用は、別途で定める場合がない場合には、契約相手者の負担とする。

⑥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사장(社章)"을 표시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⑥ 契約相手者は、購買者の"社章"を表示した物品を他人へ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⑦ 계약상대자가 제19조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품을 지정장소로 납품하기 위하여 수송하거나 납품자설치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 契約相手者が第十九条第一項による検査結果合格品を指定場所へ納品するために、輸送したり納品者設置条件で購買する物品を一時保管するときには、安全に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⑧ 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된 물품을 계약납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당사에서 지정한 휴무일은 제외)이전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⑧ 契約相手者は、検収完了した物品を契約納期5日(土曜日及び公休日、当社より指定する休務日は除く。)以前に納品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購買者と事前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13조(규격) 第十三条(規格)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규격번호 및 구매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① すべての物品の規格は、契約書に明示された規格仕様(購買規格書及び図面含む。)、規格番号、及び購買者が提示した見本の規格に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購買目的に合う新品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② 계약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서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② 契約書に規格が明示されていない場合には、商慣習と技術的な妥当性及び購買規格書等に適合している丈夫で遜色のない物品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予備付属品として物品を完成するのに必要な組立費は、物品代に含まれているものとみなす。ただし、契約書に付属品として物品を完成するのに必要な組立費が別途で表示されている場合には例外とする。

###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第十四条(包装及び品目の表示)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 ① 包装は契約条件と契約規格書に規定された包装条件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内容物の保全に充分で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물품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 ② 物品の母体と分離し、付属品又は予備付属品を包装するときには、関連参照番号及び記号等を明記した札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정부 해당부처 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③ 契約相手者は、大韓民国外にて製造された契約物品を納品しようとするときには、関税庁長が告示した原産地制度の運営に関する告示及び政府該当省庁庁長が告示した対外貿易管理規定により原産地を該当物品へ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第十五条(包装面に表示する事項)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物品の包装面には次の各号の事項を明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製作者の商号及び契約相手者の商号
2. 계약번호  
契約番号
3. 품명 및 물품식별번호  
品名及び物品識別番号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包装内容物の一連番号及び数量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純重量、総重量及び体積

6. 취급시 주의사항

取扱い時の注意事項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その他契約上要求された表記

**제16조(표기) 第十六条(表記)**

-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① 納品した物品には、契約上規格書へ規定された包装のほか、製作者名又は商標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표찰(양철판이름표),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② 表示は、物品の形態又は性質によって印刷、金属板表札(名札)、札又はその他の方法によって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 ③ 物品に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表示は、その物品の持久性と同じでなければならない、包装の表示は目的とされた場所に到着するまで鮮明でなければならない。

**제17조(포장명세서) 第十七条(包装明細書)**

-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契約相手者は、納品するとき包装内容物に関して詳細に記載する包装明細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② 包装明細書には、包装番号、包装数、包装品名、数量、純重量、総重量、体積等を記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③ 包装には、包装明細書1通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ドラムなど明細書を添付することが難しいものには、容器に記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第十八条(使用及び取扱注意書)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使用及び取扱注意が必要だと思われるときには、その物品の使用、保管、修理等の要領と注意事項を明記した注意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19조(검사) 第十九条(検査)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소정의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① 契約相手者は、検査準備を完了したときには、その事実を書面で購買者へ通知し所定の場所から必要な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既納部分について完納前に代価の全部又は一部を支給を受けようとするときも同じである。

② 구매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

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購買者は、第一項の通知を受けるときには、検査関係規定及び次の各号の要領により契約書、その他関係書類によるその日から14日以内に契約相手者の立会いのもと、その履行を確認するため検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天災、地変等の不可抗力の事由によって検査を完了できない場合には、当該事由が存続する期間と当該事由が消滅した日から3日まではこれ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등에 관하여 행한다.

検査は品質、数量、包装、表記状態、包装明細書等に関して行う。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物品を新規で製作する必要がある、物品の性質上製造過程が重要な場合には、製造過程にて検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契約相手者は、検査を受けるため当社が指定する場所で物品を搬入したときには即時搬入通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품의 납품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품의 제공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契約相手者は、検査に必要な試験品の納品を要求を受けた場合、遅滞なしにこれ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試験品の提供と検査をするための変形、消耗、破損又は変質を生ずる破傷は、契約相手者の負担とする。

③ 구매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

산한다.

③ 購買者は、第二項の検査にあたっては、契約相手者の契約履行内容の全部又は一部が契約に違反していたり、不当を発見した場合には必要な是正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契約相手者よりその事情を完了した事実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第二項の期間を計算する。

④ 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구매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④ 第二項の場合、契約履行期間が延長されたときには、購買者は第二十五条の規定によりしたい賠償金を付加する。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契約相手者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検査に立会、協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契約相手者が立会いを拒否したり、検査に協力しないことにより発生する遅滞に対しては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を準用する。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契約相手者は、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より、検査に異議があるときには、再検査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購買者は遅滞無く再検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⑦ 구매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購買者は、検査を完了したときからその結果を書面で契約相手者へ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⑧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개 사업소에 납품하는 조건(납품장소별 납품조건)으로 계약 체결 및 단가계약에 의한 인도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일괄 또는 납품장소

별로 검사요청할 수 있다.

⑧ 本社より一括して数個の事業所へ納品する条件(納品場所別、納品条件)で契約締結、及び単価契約による引渡指示をした場合には、契約相手者は一括又は納品場所別で検査要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⑨ 물품의 검사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⑨ 物品の検査前に発生した物品の紛失や毀損は、契約相手者の負担とする。

##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第二十条(特許權等の使用)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구매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契約対象者は、当該契約の履行に第三者の権利の対象とされている特許権等を使用する時は、その使用に関する一切の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契約文書に指定されていない特許権等の使用を購買者が要求した場合には所要された費用を契約対象者に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21조(보증) 第二十一条(保証)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는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① 契約対象者は瑕疵補修保証期間が別途で設定されていない物品の場合には、納品後、1年間納品した物品の規格や品質が契約内容と同一であることを保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구매자는 납품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購買者は納品後、1年以内に納品した物品の規格や品質が契約内容と相違することを発見した時は、その事実を契約対象者に通知して当該物品の代替納品又は当該物品の代金を返還するよう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約対象者は第2項の通知を受ければ、速やかに当該物品を契約条件に従って代替納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すべての代替品物代とこれに伴う経費は契約対象者の負担とする。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④ 第3項の代替物品については、第1項を適用する。

⑤ 계약상대자가 구매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구매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당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契約対象者が購買者が要求した物品の代替を拒否したり、購買者が通知をした後、所定期日内に物品の代替製品を納入しない場合は、契約対象者は当該品物代を当社に返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⑥ 구매자는 발취 시험검사 물품의 경우 검사완료후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발취 검사한 피시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기준에 미달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당해 물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를 구매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購買者は抜粋試験検査の物品の場合、検査完了後、納品された物品の品質と規格が抜粋検査した物品と同一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瑕疵補修保証期間中に再検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納品された物品の品質と規格が検査基準に達していない時は契約対象者の負担で遅滞なく当該物品を代替納品したり、当該品物代を購入者に返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22조(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第二十二條(瑕疵補修保証期間及び瑕疵補修保証金)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또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구매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성능시험 완료후 성능보장 유보

금을 환불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① 契約書に瑕疵補修保証期間及び瑕疵補修保証金額(又は瑕疵補修保証金率)が明示された場合に契約対象者は、当該物品の代金を支給するまで購入者に瑕疵補修保証金を現金又は施行令第37条第2項各号の保証書又は証券等で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性能試験の条件で購入した場合の瑕疵補修保証金は性能試験完了後、性能保障の留保金の払い戻しが行うまで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중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約対象者は瑕疵補修保証期間中に納入した物品の瑕疵が発生した時には、契約対象者の負担で保守するか代替納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購買者は必要に応じて瑕疵補修保証金で保守等の保全措置を取ることができる。
- ③ 하자보수보증기간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구매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 ③ 瑕疵補修保証期間中、瑕疵発生事実がない時には購買者は瑕疵補修期間完了後、契約対象者の請求により瑕疵補修保証金を返還する。

### 제23조(대가의 지급) 第二十三条(代価の支給)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契約対象者は契約履行を完了した後、第19条の規定による検査に合格した時には代価支給請求書(下請人に対する代金支給計画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を提出する等、所定手続きに従って代価支給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구매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② 購買者は、第1項の請求を受けた時には、その請求を受けた日から5日(祝日及び土曜日は除く)以内に、その対価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同代価支給期限にもかかわらず、資金事情等、不可避な事由がない限り最大限迅速に代価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契約対象者との合意により5日を超過しない範囲内で代価の支給期間を延長する特約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天災地変等の不可抗力の事由により代価を支給できないようになった場合には、当該事由が存続される期間と当該事由が消滅した日から3日までは代価の支給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 ④ 구매자는 제1항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購買者は、第1項の請求を受けた後、その請求内容の全部又は一部に不当さを発見した時には、その事由を明示して契約対象者に当該請求書を返送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返送した日から再請求を受けた日までの期間は第2項の支給期間にこれを算入しない。
- ⑤ 대가지급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 ⑤ 代価支給担当職員は、第2項及び第4項による代価支給時、第1項の代金支給計画上の下請人に代価支給の事実を通報して代金受領の内訳(受領者、受取額、受領日等)及び証憑書類を提出(「電子署名法」第2条による電子文書による提出を含む。以下第23条の2第1項による提出及び通報において同)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⑥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구매자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는 분납물품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契約上、分納になっていたり、購買者の必要で、分納を要請した場合には契約対象者は分納物品についての代価支給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 ⑦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량 납품완료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第5項の場合を除いては全量納品完了した後、支給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

### 제23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第二十三条の二(請負金代金の支給確認)

- ① 계약상대자는 제23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約対象者は第23条に従って代価支給をされた場合、15日以内に下請代金を下請人に現金で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下請代金の支給内訳(受領者、支給額、支給日等)を5日(祝日及び土曜日は除く)以内に、購買者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대가지급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3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 ② 代価支給担当職員は、第1項による代金支給内訳を第23条第5項によって下請人から提出された代金受領の内訳と比較・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 ③ 請負取引の公正化に関する法律第2条に従い同法の適用を受けない下請契約については、第1項及び第2項を適用しない。(第23条第5項の場合にも同)

### 제2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第二十三条の三(国民健康保険料等の事後清算)

대가 지급담당직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3조에 따른 대가지급시 계약예규계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代価支給担当職員は「政府の入札・契約執行基準」第93条により国民健康保険料等を事後精算することにした契約については、第23条による代価支給時、契約

例規契約「政府の入札・契約執行基準」第94条により精算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2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第二十四条(代価支給遅延に対する利息)

- ① 구매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① 購買者は、代価支払請求を受けた場合に第23条の規定による代価支給期限まで代価を支給しなかった場合には、支払期限の翌日から支給する日までの日数(以下“代価支給遅延日数”と言う)に当該未支給額については、遅延発生時点に金融機関貸出平均金利(韓国銀行の統計月報上の金融機関の貸出平均金利を言う)を掛けて算出した金額を利息で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天災地変等の不可抗力的な事由により検事又は代価支給が遅れた場合に、第19条第2項の但書及び第23条第3項の規定による遅延期間は第1項の代価支給遅延日数に算入しない。

#### 제25조(지체상금) 第二十五条(遅滞賠償金)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約対象者は契約で決めた納入期限内に物品を納品しない時には、毎遅延日数ごとに契約書で定めた遅滞償金率を契約金額(長期継続契約の場合は、年次別の契約金額)に掛けて算出した金額(以下“遅滞償金”と言う)を現金で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② 購買者は、第1項の場合に既納部分に対する検査を経て、当該部分を引受(引受せず、管理・使用している場合を含む)したその部分に相当する金額を契約金額から控除する。しかし、既納部分の引受は性質上、分割できる物品に対する完成部分として引受するものに限る。

③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購買者は、次の各号の1に該当され納品が遅滞されたと認定する時は、その日数を第1項の遅延日数に算入しない。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1. 天災地変等、不可抗力の事由による場合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2. 契約対象者が代替使用できない重要社給材料の供給が遅延され、製造工程の進行が不可能だった場合

3. 당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当社の責任で製造の着手が遅延され、または中断された場合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その他の契約対象者の責任に属していない事由により遅れた場合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④契約担当職員は、第1項の規定による遅延日数を次の各号によって算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

사기간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1. 納品期限内に第12条第1項の規定によって物品(検査に必要な書類を含む。以下2項と同)を納品した時は、第19条の規定による検査に所要した期間は遅延日数に算入しない。ただし、納品期限以降に第19条第3項の規定による是正措置をした時には是正措置をした日から最終検査に合格した日までの期間(検査期間が第19条第2項の規定に定めた期間を超過した場合には同調に定めた期間に限る。以下同)を遅延日数に算入する。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納品期限を経過して物品と検査書類を提出した時は、納品期限の翌日から検査(是正措置をした場合には、最終検査)に合格した日までの期間を遅延日数に算入する。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당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納品期限の末日が公休日(当社の休業日である場合を含む)の場合、遅滞日数は公休日の翌日から起算する。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購買者は、第1項から第4項の規定による遅滞償金を契約対象者に支給される代価、代価支給遅延に対する利息又はその他の預置金等と相殺することができる。

##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第二十六条(契約期間の延長)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① 約対象者は第25条第3項の各号の1の事由が、契約期間内に発生した場合には、契約期間の終了前に遅滞なく契約担当職員に書面で契約期間の延長申請と第5項

の規定による契約金額の調整申請を共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延長事由が契約期間内に発生して契約期間の経過後、終了された場合には同事由が終了した後、即時に契約期間の延長申請と第4項の規定による契約金額の調整申請を共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購買者は、第1項の規定による契約期間の延長申請が受け付けられた時は、即時にその事実を調査確認し、契約が適切に履行できるように契約期間の延長等必要な措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구매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購買者は、第1項の延長請求を承認した場合には、第25条の規定による遅滞償金を賦課してはならない。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④ 2項の規定により契約期間を延長した場合には、その変更された内容によって実費を超過しない範囲内で契約金額を調整する。
-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購買者は、第1項から第4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契約対象者の義務不履行により発生した遅滞償金が施行令第50条第1項の規定による契約保証金相当額に達した場合として契約目的物が国家政策事業の対象であったり、契約の履行が労使紛糾等不可避な事由により遅延された時は、契約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5項の規定による契約期間の延長は遅滞償金が契約保証金相当額に達した時にし  
なければならず、延長された契約期間については、第25条の規定にかかわら  
ず、遅滞償金を賦課してはならない。

**제2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第二十七条(契約相  
手者の責任の事由による契約の解除または解約)**

- ①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  
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  
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 ① 購買者は契約対象者が次の各号の1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契約の全部又は一  
部を解除又は解約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3号の場合、契約対象者の契  
約履行可能性があり、契約を維持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契約  
対象者が契約履行が完了していない部分に相当する契約保証金を追加納付する  
時は、契約を維持する。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  
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1. 契約書上の納品期限(又は延長された納品期限)内に契約対象者が契約された  
規格等のような物品の納品を拒否したり、完了できなかった場合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납품기한까지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 契約対象者の帰責事由により納品期日内に納品する可能性がないことが明白  
だと認められる場合(納品期限まで認定試験成績書を提出しなかった場合を含  
む)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  
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한 경우

3. 第25条第1項の規定による遅滞償金が施行令第50条第1項の規定による当該契  
約の契約保証金の相当額(契約金額の100分の10以上)に達した場合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長期物品製造等の契約において、第2次以降の契約を締結しない場合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契約の遂行中、賄賂授受又は正常的な契約管理を妨害する不法・不正行為がある場合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その他の契約条件を違反し、その違反によって契約の目的を達成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購買者は、第1項の規定により契約を解除又は解約する時は、その事実を当該契約対象者に通知して既納部分検査をすませた物品を既納部分として引受した場合には、当該部分に相当する代価を契約対象者に支給する。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契約対象者は契約上の期限内に納品できないと認める時は、遅滞なく購入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1項の規定により契約が解除又は解約された場合、契約対象者は支給された前金について未精算残高がある場合にはその残額に対する約定利息相当額[事由発生時点の金融機関貸出平均金利(韓国銀行の統計月報上の平均貸出金利を言う)によって算出した金額を加算し、発注機関に返済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2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第二十八条(事情変更による契約の解除または解約)

① 구매자는 제27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구매자의 불가피한 사정

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購買者は、第27条第1項各号の場合の他に客観的に明白な購買者の不可避な事情が発生した際には契約を解除又は解約することができる。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購買者は、第1項の規定により契約を解除又は解約する場合には、次の各号に該当する金額を解除又は解約した日から14日以内に契約対象者に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第7条の規定による契約保証金を同時に返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1. 全体物品製造の完成に向けて契約の解除又は解約日以前に投入された契約対象者の人力・材料及び装備の撤退費用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約対象者は前金に対する未精算残高がある場合には、これを購入者に返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未精算残額に対する利息は加算しない。

### 제2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第二十九条(正当でない業者の入札参加資格の提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① 約対象者が契約事務規定第14条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社から一定期間の間の入札参加資格の制限措置を受けることになる。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계약사무규정 제14조에 의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約対象者は「国家を当事者とする契約に関する法律」及び「地方自治体を当事者とする契約に関する法律」又は「公共機関の運営に関する法律」に従い、入札参加資格の制限を受けた事実が通報されたり、指定情報処理装置に掲載された場合、契約事務規定第14条による必ず入札参加資格の制限措置を受けることになる。

### 제30조(상계) 第三十条(商計)

구매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구매자에게 납부해야 할 배상금 및 기타 채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협의하여 공제할 수 있다.

購買者は契約の履行と関連して契約対象者が購買者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賠償金及びその他の債務を契約対象者に支給する代価で協議して控除することができる。

### 제3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第三十一条(技術知識の利用及び秘密厳守義務)

① 구매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구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①購買者は、契約書上の規定により契約対象者が提出する様々な報告書、情報、その他資料及びこれにより得た技術知識の全部又は一部を契約対象者の承認を得て購買者の利益のため複写、利用又は公開することができる。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구매자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契約対象者は、当該契約を通じて得たすべての情報または購買者の機密事項を契約履行の前後を問わず、外部に漏洩することができない。

### 제32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第三十二条(適確な審査関連事項の履行)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施行令第42条第1項本文の規定による物品を製造・購入することにより契約対象者は、物品購買、適格審査の詳細基準に規定された事項に対して適格審査当時提

出した内容通りに徹底的に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구매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② 購買者は、第1項に規定した履行状況を随時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提出された内容通り履行していない場合は、即時是正するよう措置することができる。

### 제33조(신의 성실) 第三十三条(信義誠実)

계약상대자는 당사에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선량한 계약상대자로서 성실하게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契約対象者は当社に納品したものについて善良な契約対象者として誠実にその性能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起因した物品の瑕疵が発生した時は、その責任を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34조(분쟁의 해결) 第三十四条(紛争の解決)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① 契約の遂行中、契約当事者間に発生した紛争は協議により解決する。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② 1項の規定による協議が行われない時には、裁判所の判決又は「仲裁法」による仲裁により解決する。ただし、「国家を当事者とする契約に関する法律」(以下“国家契約法”と言う)第4条の規定による国際入札の場合には国家契約法第28条或いは第31条に規定した手続ができる。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契約対象者は第1項及び第2項の規定による紛争処理の手続き遂行期間中に契約の履行を中止してはならない。

### 제35조(보칙) 第三十五条(付則)

하도급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계약조건 포함)과 원도급계약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請負契約に該当する場合、公正取引委員会の推奨標準下請契約書(契約条件を含む)と、元請け契約条件を同契約一般条件より優先して適用することができる。

### 제36조(언어) 第三十六条(言語)

계약은 한국어 및 일본어로 작성되며, 한국어본과 일본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契約は韓国語及び日本語で作成され、韓国語版と日本語版の間に不一致が存在する場合には韓国語版が優先する。

부 칙  
付 則

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2014. 1. 2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同物品購買(製造)契約一般条件は2014. 1. 20日以降、入札公告をした方から適用する。

[일본 히타치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축]

[日本 日立太陽光発電システム構築]

## “FEP” 계약 특수 조건

## “FEP” 契約 特殊 条件

2017. 05



# 계약 특수 조건 (契約特殊条件)

제1조(적용범위)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전KDN(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본 히타치주오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 케이블보호용 FEP관 및 부자재 추가구매에만 적용한다.

第一条(適用範囲) この契約特殊条件(以下"特殊条件"とする)は、韓電KDN(以下"発注先"とする)と契約相手者が締結する"日本 日立十王太陽光発電システム 構築" ケーブル保護用FEP管及び付属資材の追加購買のみ適用する。

제2조(사용승인) ① 본 자재는 "일본 히타치주오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에 납품 및 설치되는 기자재로 일본내에서 사용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본 제품에 대하여 납품 및 설치 완료후, 일본 승인기관에서 불승인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二条(使用承認) ① 本資材は、"日本 日立十王太陽光発電システム 構築"に納品及び設置される資機材として日本内に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製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② 本製品に関して納品及び設置完了後、日本の承認機関にて不承認時すべての責任は契約相手者にある。

③ 契約相手者は、発注者へ契約の義務を誠実に履行するという覚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조(계약변경) ① 본 제품에 대하여 발주처는 규격 또는 수량 변경(증가/감소)이 가능하며, 규격 또는 수량 변경시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 한다.

② 변경된 수량분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변경계약을 한다.

第三条(契約変更) ① 本製品に関して発注先は、規格又は数量変更(増加/減少)が可能であり、規格又は数量変更時には発注先は契約相手者へ即時に通知する。

② 変更された数量分に関しては、最初契約金額を基準として計算し、変更契約をする。

제4조(검수 지침) ① 자재 검수는 자재 납품전에 수행하고, 장소 및 일시는 상호합의 하여 진행 한다.

② 검수합격은 제품에 대한 검수시 발주처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 승인시 검수합격으로 한다.

第四条(検収指針) ① 資材検収は、資材納品前に遂行し、場所及び日時は相互協議をし、進行する。

② 検収合格は、製品に関する検収時発注先から要請した資料を提出し、発注先の承認時、検収合格とする。

제5조(납품완료)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 발주처 승인시 납품완료로 한다.

第五条(納品完了) 発注先より指定された場所に納品し、発注先の承認時に納品完了とする。

제6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하자보증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六条(瑕疵保証) ① 契約相手者は、発注者へ瑕疵保証の義務を誠実に履行するという覚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업무 취급요령,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된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가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처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위 ① ~ ④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 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第八条(保安及び個人情報保護の遵守) ① 契約相手者は、発注先の保安業務の取扱要領、情報通信保安業務の処理指針、情報システムの保安対策及び公共機関の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法律により樹立された個人情報保護制度の運用指針を遵守するようにする義務を持つ。

② 契約相手者は、事業遂行中、獲得することとなる産出物及びその他の資料は発注先の許可なく外部へ流出したり、他の目的で使用することはできない。

③ 契約相手者は、本契約期間の前後を問わず、本契約と関連して認知した発注先の事業内容に関する秘密事項について第三者へ漏洩してはならず、発注先が要求する保安

事項を徹底して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契約相手者は、発注先の事前承認なしでは本契約に伴って遂行される事業に関する事項を広告または広報を行ってはならない。

⑤ 契約相手者が上の①～④の事項に違反したときには、それに相応する民・刑事所の責任を負う。

제9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① 본 계약의 결제통화 및 대가지금은 엔화로 한다.

② 본 자재의 납품조건은 현장도착도로 한다.(현장도착전 소요비용 일체는 납품자 부담)

③ 본 사업은 일본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제세금등은 일본의 법령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한국내에서 대가청구시에는 영세율이 적용 된다.

④ 대가지급에 따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대가청구는 발주처로부터 납품완료 승인 이후 청구 할 수 있다.

第九條(代価の請求及び支払い) ① 本契約の決済通貨及び代価支払いは、円価とする。

② 本資材の納品条件は、現地到着とする。(現場到着前の所要費用の一切は納品者が負担。)

③ 本事業は、日本内にて遂行される事業としてすべての税金等は日本の法令に準じて適用する。ただし、韓国内にて代価請求時はゼロ税率が適用される。

④ 代価支給に伴う手数料及びその他の費用は、契約相手者が負担する。

⑤ 代価請求は、発注先より納品完了の承認以後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10조 (지체상금)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일 까지 납품되지 아니하는 경우 납품예정일 익일로부터 납품완료일 까지의 기간(이하 "지체기간")동안 매일 계약금액의 0.1%(1/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납품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으로 인해 "히타치 주오 태양광발전사업 건설공사"의 지체가 발생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에 따른 지체상금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다만 상기 ①, ②항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

第十一條(遲滯賠償金) ① 契約相手者は、納品日まで納品されていない場合、納品予定日の翌日より納品完了日までの期間(以下"遲滯期間")の間、毎日契約金額の0.1%(1/1,000)に相当する遲滯保証金を納品完了日より1ヶ月以内に現金で発注先へ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契約相手者の明白な帰責によって"日立十王太陽光発電事業建設工事"の遲滯が発生したと客觀的に認定されるときには、それに伴う遲滯賠償金も契約相手者が負担する。

③ ただし、上記①、②項の遲滯賠償金は契約金の10/100を超過することはできない。

제11조 (기타사항 및 분쟁해결)①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수행 중 발행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히타치 주오 태양광발전사업 건설공사 공사도급

계약서"및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일본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③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①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 지방법원의 배타적·전속적 관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第十一条(その他の事項及び紛争解決) ① 本契約条件に明示されていない事項及びこの契約の遂行中発生する紛争に関しては、発注先の"日立十王太陽光発電事業建設工事 工事請負契約書"及び相互の協議を行い決定する。

② 日本語で記載された事項が韓国語と相違する場合、韓国語で記載した事項が優先となる。

③紛争が発生した日から30日以内に①項の協議が行われないうちは、ソウル地方法院の排他的・専属的な管轄にしたがい、紛争を解決することとする。

[일본 히타치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축]

[日本 日立太陽光発電システム構築]

# "FEP" 자재규격서

## "FEP"資材規格書

2017. 05



# 한전 KDN 자재규격서(韓電KDN 資材規格書)

## (TECHNICAL SPECIFICATIONS OF KEPCO KDN)

작성부서 : 일본특별지점

作成部署 : 日本特別支店

품 명 : 일본 히타치주오 태양광발전소 케이블 보호용 FEP관 및 부자재 구매

品 名 : 日本 日立十王太陽光発電所ケーブル保護用FEP管及び付属資材の購買

제정일자(制定日時) : 2017. 05.

### I. 일반사항 (一般事項)

1. 적용범위 (適用範圍)
2. 재료 및 부품 구성 (材料及び部品構成)
3. 검 사 (檢査)
4. 납 품 (納品)
5. 표시 및 포장 (表示及び包装)
6. 교육 및 기술지원 (教育及び技術支援)
7. 하자보증 (瑕疵保証)
8. 보안 책임준수 (保安の責任遵守)
9. 기 타 (その他)

### II. 기술사항 (技術事項)

1. 수 량 (數量)
2. 세부 자재규격 (詳細資材規格)

# 1. 일반사항(一般事項)

## 1. 적용범위(適用範圍)

본 규격은 한전KDN(이하"발주처"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일본 히타치 태양광발전 (54MWp급) 구축"사업의 발전시스템 효율이 최대로 발휘 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고, 일본내 납품하는 자재로서 일본 규격(JIS, JEC) 이상 또는 동등규격 이상으로 일본내 사용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납품하고, 설치시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

本規格は、韓電KDN(以下"発注先"とする)より遂行する"日本 日立太陽光発電 (54MWp級)構築"事業の発電システム効率が最大に発揮されるよう製作された製品でなければならず、日本内で納品する資材として日本規格(JIS, JEC)以上又は同等の規格以上で日本内で使用に問題のない製品として納品し、設置時に技術支援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1.1 적용 규격 및 표준(適用規格及び標準)

제안 자재의 설계, 제작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된 아래 규격 및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한 규격 및 표준에 명시된 설계기준에 의거한다.

단, 가장 최근에 발행된 각종 적용규격 및 표준이 본 기술규격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입찰참여자는 새로운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提案資材の設計、製作及び試験は、契約時点を基準に最も最近に刊行された下記の規格及び標準又はこれに同等すると発注先が認定した規格及び標準に明示される設計基準に基づく。

ただし、最も最近に発行された各種適用規格及び標準が本技術規格書の内容と相違する場合、入札参加者は新しい規格及び標準を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発注先の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JIS)
-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IEC)

가. 상기 기준에 의거 제작된 본 자재는 상기 표준안에 부합된 발주처의 관련 장비들과 기능변경 없이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나. 입찰참여자는 발주처의 사업 환경을 숙지하고, 최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주처의 사업진행 및 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イ. 上記の基準に基づいて製作された本資材は、上記の標準内に符合された発注先の関連装備と機能変更なしの接続が可能でなければならない。

ロ. 入札参加者は、発注先の事業環境を熟知し、最上のシステム構築のため発注先の事業進行及び管理のため、積極的な協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재료 및 부품 구성(材料及び部品構成)

### 2.1 구조(構造)

가. 납품자재는 1.1항에 따라 도면 및 자재규격서에 부합되게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イ. 納品資材は、1.1項にしたがって図面及び資材規格書に符合するよう製作された製品でなければならない。

## 3. 검사 검사

### 3.1 검수 요청(檢収要請)

입찰참여자는 납기전까지 발주처(일본특별지점)에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入札参加者は、納期前まで発注先(日本特別支店)へ紙面で検収を要請し、これに合格してなければならない。

가. 입찰참여자는 발주처의 요청시 성능시험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イ. 入札参加者は発注先の要請時、性能試験計画書を発注先へ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1) 성능시험계획서

- 성능시험방법 및 절차
- 시험 항목
- 검수장소 및 검수기간(발주처와 별도 협의)

#### 1) 性能試験計画書

- 性能試験方法及び手順
- 試験項目
- 検収場所及び検収期間(発注先と別途協議)

### 나. 검사 면제(檢査免除)

1) 공인기관의 인증 필하고, 그 성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재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할 수 있다.

1) 公認機関の認定が必要で、その成績を証拠する書類を提出した資材については、試験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 3.3 외관 및 수량 검사(外觀及び数量検査)

가. 현장도착분에 대하여 아래 방법으로 수량 및 외관 검사를 실시한다.

- 수 량 : 전량검수

- 외 관 : 샘플검사(KSQISO 2859-1 통상 검사 수준 G-II AQL)

イ. 現場到着分に関して、下記の方法で数量及び外觀検査を実施する。

- 数 量: 全体量 検収

- 外 観: サンプル検査(KSQISO 2859-1 通常検査水準 G-II AQL)

### 3.4 검수 자료 제출(検収資料提出)

가. 입찰참여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제품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イ. 入札参加者は、発注者の要請により該当製品の公認書及び試験成績証明書を発注先へ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납 품(納 品)

4.1 입찰참여자는 계약상의 내역서에 명기된 전 물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4.1 入札参加者は、契約上の内訳書に明記されたすべての物量を納品しなければならない。

4.2 각 부품은 운송 중 발생할 파손, 습기, 진동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포장하여 내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될 경우 입찰참여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2 各部品は、運送中に発生する破損、湿気、振動等に耐えられるよう包装し、内容物が損傷しないようにし、損傷の場合は入札参加者の負担で原状復旧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3 납 기 일

납품일자(예정) : 2017.06.02.

納期日付(予定) : 2017.06.02.

- 자재납품은 공정일정에 따라 차수 및 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 資材納品は工程日程によって次数及び日程が変更する可能性がある

4.4 납품장소 : 일본 히타치 태양광발전소 구축 현장

( 주소 : 319-1305 茨城県 日立市十王町高原 )

4.4 納品場所：日本 日立太陽光発電システム構築現場

(住所：319-1305 茨城県 日立市十王高原)

## 5. 표시 및 포장(表示及び包装)

### 5.1 포장(包装)

가. 본 자재는 보관 및 수송에 따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イ. 本資材は、保管及び輸送にともなう危険から保護されるように丈夫で安全に包装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나. 포장의 표시(包装の表示)

1) 본 장치의 포장 표면에는 품명, 수량, 제조자명, 납품처, 주의사항 표시 또는 약호를 영문 또는 일문으로 표시해야 한다.

1) 本装置の包装の表面には、品名、数量、製造者名、納品先、注意事項を表示または略号を英文または日本語で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7. 하자보증(瑕疵保証)

7.1 납품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태양광발전소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7.1 納品設備の瑕疵担保責任期間は、太陽光発電所の納品完了日から1年とする。

7.2 기술규격서에 명시한 규격사항 이외에 입찰참여자(입찰참여자)는 발주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 보증(무상교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입찰참여자가 부담한다.

7.2 技術規格書に明示する規格事項に加えて、入札参加者は発注先に関して次の

ような事項を瑕疵保証(無償交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これによる所要費用は入札参加者が負担する。

가. 제작 불량 및 기술 미숙으로 인한 결함

나.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 다. 발주처의 실수가 아닌 결함
- 라. 기타 하자로 판단되는 사항
- イ. 製作不良及び技術の未熟による欠陥
- ロ. 原材料の選択不良による欠陥及び故障
- ハ. 発注先の過ちではない欠陥
- ニ. その他の瑕疵と判断される事項

## 8. 보안 책임준수(保安責任の遵守)

8.1 입찰참여자는 납품 및 기술지원시 취득한 발전소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 시설과 관련한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8.1 入札参加者は、納品及び技術支援時に獲得した発電所システム環境、運営に関わる情報、施設に関する資料等を外部に漏洩してはならない。

8.2 해당 자료 및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입찰참여자는 모든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8.2 該当資料及び情報が外部に流出した場合、これによる問題発生時、入札参加者はすべての民事・刑事上の責任を負い補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8.3 입찰참여자는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참여자 대표 명의로 보안서약서(별도 제공)를 계약시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3 入札参加者は、必要な諸般の保安事項を忠実に履行しなければならず、入札参加者の代表名義で保安契約書(別途 提供)を契約時に事業担当者へ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II. 기술규격(技術規格)

### 1. 품명 및 예상수량(品名及び予想数量)

No	종류種類	규격規格	단 위單位	예상 수량(予想 数量)
				1차1次
1	FEP	40Φ	메타[M] メートル	50,000
2	FEP	65Φ	메타[M] メートル	20,500
3	커플링 カップリング	40Φ	개個 [EA]	250
4	커플링 カップリング	65Φ	개個 [EA]	650

- 자재납품은 공정일정에 따라 차수 및 수량이 변동될수 있음
- 資材納品は工程日程によって次数及び数量が変動する可能性が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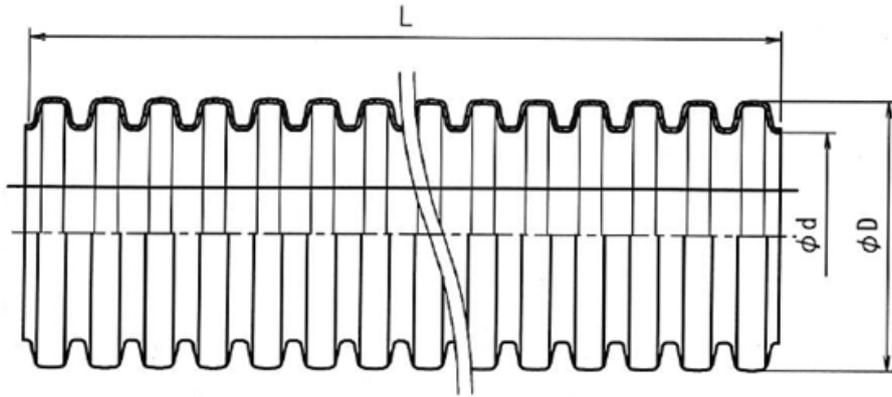
### 2. 세부 자재규격 詳細資材規格

적용자재는 JIS기준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適用資材は、JIS基準と同等以上の製品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証拠資料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1 F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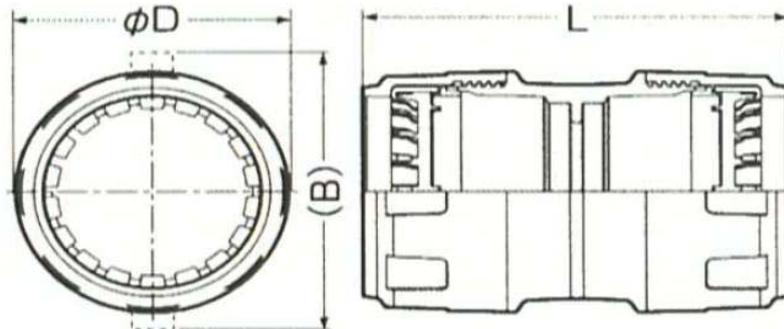
### 가. 규격 및 사이즈(規格及びサイズ)



규격 規格 [FEP]	L(m)	무게(Kg)이상 重さ(kg)以上	ΦD(mm)	Φd(mm)	최대기장 (m) 이상 最大長さ(m) 以上
40Φ	50	15	55	41	280
65Φ	50	30	86	66	100

## 2.2 (커플링)

### 가. 규격 및 사이즈(規格及びサイズ)



규격[커플링] 規格[커플링]	ΦD	B	L
40Φ	72	-	113
65Φ	108	-	157



条件、その他契約上のすべての条件がこの契約の一部になることを承諾し、別添の注文書(内訳書)、機材物品へ関連する契約上の義務の履行を完遂することを確約いたします。

2017년 월 일

2017年 月 日

발 주 자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61

상 호 : 한전KDN(주)

대표자 : 임 수 경 (인)

發 注 者 住 所 : 全南 羅州市 ビックラム路 661

商 号 : 韓電KDN(株)

代表者 : イム・スギョン (印)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契約相手者 住 所 :

商 号 :

代表者 : (印)